

『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하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 추진
-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, 법령 및 제도개선 등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자체 간 연대 및 협력 강화

3. 주요내용

- 협의회 기능(안 제3조)
 - 행복실현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
 - 행복실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- 행복실현과 관련된 조사, 연구,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
 - 행복실현을 위한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·단체와 협력 또는 건의하는 사항 등
- 협의회 구성(제4조) : 39개 자치단체(규약안 별표 참조)
- 임원(안 제5조) : 공동회장 3명(상임회장 1명 포함), 부회장 10명 이내, 사무총장 1명, 감사 2명

○ 회의 및 의결(안 제7조)

-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,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함
-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

○ 회장단 회의(안 제8조) : 공동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 운영

○ 고문과 자문위원(안 제13조)

-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상임회장 위촉
- 고문은 행복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 위촉단,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고문

○ 경비부담(안 제17조)

-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,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~제158조

○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○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‘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’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「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」에 정식 가입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제2항에 의거,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전국 39개 참여 지자체 중 22개 지자체가 의회 의결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됨.
- 시민 행복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하는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행복정책 공유와 협력으로 “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”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 결과,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「지방자치법」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의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, 연회비 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